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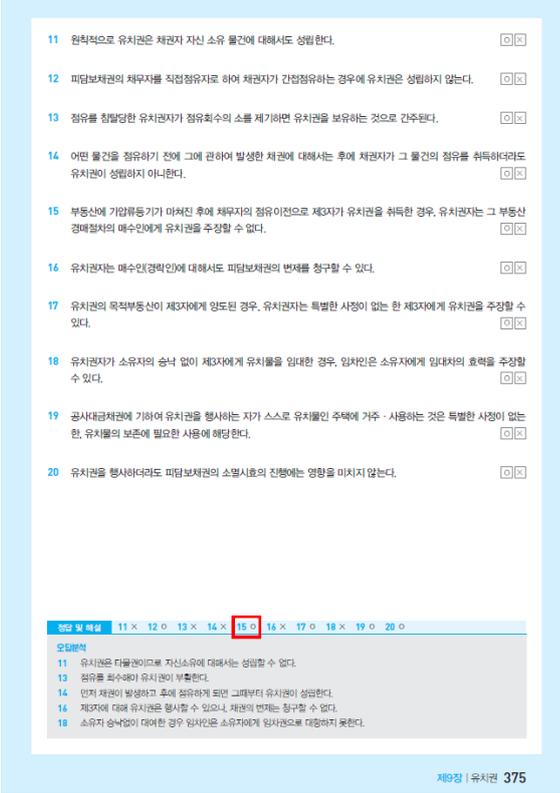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	
2권 68p	문제-본문	<p>51969new.stdc.co.kr</p> <p>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 여기서 양(+)은 가격과 구입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, 음(-)은 반대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38 347 861 414"> <thead> <tr> <th></th> <th>대체효과</th> <th>+</th> <th>소득효과</th> <th>=</th> <th>가격효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정상재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열등재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&gt;</td> <td></td> <td>+</td> </tr> <tr> <td>기판재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&lt;</td> <td></td> <td>+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㉕ 수요곡선의 도출 X재의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 균형점의 이동을 추적하면 수요곡선이 도출된다. 즉 가격소비곡선(ICC)으로부터 수요곡선이 도출된다.</p> <p>㉖ 수요의 교차탄력성과 가격소비곡선의 형태(교차효과) 가격소비곡선이 우회향하면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Y재 수요량이 감소하므로 두 재화는 대체재이고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양(+)이다. 같은 논리로 가격소비곡선이 우상향하면 두 재화는 보완재이고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음(-)이다.</p> <p>(5) 보상수요곡선 *27, 30, 33차기*</p> <p>㉑ 보상수요곡선의 의미 ㉑ 위에서 본 수요곡선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통수요곡선(ordinary demand curve) 또는 통상적 수요곡선이라고 한다. 마셜(M. Marshall)에 의해 체계화되어 마셜의 수요곡선이라고도 한다.</p> <p>㉒ 보통수요곡선은 주어진 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효용극대화의 수요함수이다.</p> <p>㉓ 이에 대해 보상수요곡선(compensation demand curve)은 가격효과에서 소득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상대가격 변화의 효과만을 나타낸 수요곡선이다.</p> <p>㉔ 보상수요곡선은 일정한 효용을 달성하기 위한 지출극소에서 도출되므로 지출극소화의 수요함수이고, 보상수요곡선 상의 모든 점에서는 소비자의 효용이 동일하다.</p> <p>㉕ 보상수요곡선은 Hicks(J. R. Hicks)에 의해 주장되어 Hicks의 수요곡선이라고 한다.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찰될 수 없는 가상의 수요곡선이다.</p> <p>㉖ 보상의 종류 ㉖ Hicks(Hicks)의 보상은 효용보상으로 가격변화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시켜주는 보상이다.</p> <p>㉗ 슬루츠키(Slutsky) 보상은 구매력보상으로 가격변화 이전과 동일한 소비를 유지시켜주는 보상이다.</p> <p>㉘ 보상수요곡선의 특징 ㉘ 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만을 고려하여 도출된 수요곡선이므로 소득효과가 0이라면 보통수요곡선과 일치한다.</p> <p>㉙ 콕-디글러스(Cobb-Douglas) 효용함수의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고 우회향하는 일 반적인 형태라면 보상수요곡선은 항상 우회향하므로 기판재(Giffen's goods)의 보상수요곡선도 우회향한다.</p> <p>㉚ 그러나 레온티에프(Leontief) 효용함수의 무차별곡선 (완전대체관계)처럼 L자형인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0이므로 보상수요곡선은 수직선 형태가 된다.</p> <p>68 제1편   미시경제학</p>		대체효과	+	소득효과	=	가격효과	정상재	-		-		-	열등재	-		>		+	기판재	-		<		+	(완전보완관계)
	대체효과	+	소득효과	=	가격효과																						
정상재	-		-		-																						
열등재	-		>		+																						
기판재	-		<		+																						
		수정 사유	문항 오류 수정																								

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3권 285p	문제-본문	<p>10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연수과정을 마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11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이면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12 감정평가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13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14 자본금 미달은 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15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가중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16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3명이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17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이어야 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18 감정평가법인에는 3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있어야 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19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관리·징계위원회에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20 감정평가법인들이 종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에도 고의가 없다면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<b>정답 및 해설</b> 10 ○ 11 × 12 × 13 ○ 14 × 15 × 16 × 17 × 18 × 19 ○ 20 ×</p> <p><b>오답해설</b></p> <p>11 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(5명)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하며,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각각 2명이다. 그러므로, 지문의 경우 설립기준을 충족한다.</p> <p>1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4 자본금 미달은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 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해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중여부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.</p> <p>15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16 2명(대표이사 1명, 감사 1명) 및 영 제24조 제2항)</p> <p>17 <b>대표이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니기</b> 할 수 없다.</p> <p>18 감정평가법인에는 <b>10인</b>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있어야 한다.</p> <p>20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다(법 제25조 제1항, 법 제33조 제1항 제2호)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제1편   ○ × 핵심체크 285</p>	<p>17번 정답 : ○</p> <p>17번 해설 : <b>삭제</b></p> <p>18번 해설 : 감정평가법인에는 <b>5인</b>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있어야 한다.</p> <p>[변경 근거]</p> <p>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(설립 등)</p> <p>③ <b>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.</b></p> <p>④ <b>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.</b>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제2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.</p> <p>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(감정평가법인의 구성)</p> <p>③ 법 제29조 제4항 전단에서 “<b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</b>”란 <b>5명</b>을 말한다.</p>
		수정 사유	법 개정으로 인한 정답과 해설 변경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1권 285p	개념,공식-설명	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#0070C0; font-weight: bold;">감정평가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</p> <p>㉔ 차면시설(遮面施設)</p> <p>제243조(차면시설의무)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.</p> <p>㉕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-임의규정[80다1634]</p> <p>제244조(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)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,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장(貯藏)·모아(貯)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지주지, 구계(溝渠)·도랑 또는 지하실장(室藏)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.</p> <p>② 전항의 공사를 할 때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역(汚穢)이 이곳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㉖ 관습에 관한 규정이 있는 상연관계 : 저수·인수·배수를 위한 공작물 설치비용(제223조), 하류연안의 용수권 보호(제222조), 수류의 변경(제229조), 용수권의 승계(제233조), 소용공사의 비용(제222조), 공유하천 용수권(제231조), 경계표·담의 설치 및 비용(제237조)과 경계선 부근의 건축(제242조)이 있고 상연관계규정이 아닌 것으로는 특수지역권(제302조)이 있다.</p> <p><b>2.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</b></p> <p>(1) 의미</p> <p>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(제213조~제214조) 이를 지상권(제290조), 지역권(제301조), 전세권(제319조), 지당권(제370조)에 준용하고 있다.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규정이 없으나 다수의 견해는 질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한다.</p> <p>(2) 소유물반환청구권</p> <p>① 의미 *214조 7항*</p> <p>제213조(소유물반환청구권)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(법률상 정당한 원인없이)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요건</p> <p>㉑ 아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. *214조 7항*</p> <p>㉒ 불법점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매도하여 인도한 자는 등기명의가 그에게 남아있다는 사실만 으로 현재의 점유자라고 할 수 없어 상대방이 될 수 없다[76다2461].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·사용하는 매수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 *214조 7항*</p> <p>㉓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 *214조 7항*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#0070C0; font-weight: bold;">제4장   소유권 285</p>	<p>㉔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.</p>
		수정 사유	오타 수정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<p>2권 365p 번호 : 18</p>	<p>정답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 font-size: small;">감정평가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</p> <p><b>18</b> 다음의 IS-LM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<small>정답이 옳고 X</small></p> <math display="block">Y = C + I + G \text{ (생산물시장의 균형식)}</math> <math display="block">L = M \text{ (화폐시장의 균형식)}</math> <math display="block">C = a_1 + a_2 Y \text{ (} 0 &lt; a_2 &lt; 1 \text{)}</math> <math display="block">I = b_1 + b_2 r \text{ (} b_2 &lt; 0 \text{)}</math> <math display="block">L = d_1 + d_2 Y + d_3 r \text{ (} d_1 &gt; 0, d_2 &lt; 0 \text{)}</math> <p><math>C</math>와 <math>M</math>은 정책변수 <math>a_1, a_2, b_1, b_2, d_1, d_2, d_3</math>은 모두 상수</p> </div> <p>① <math>a_2</math>의 절댓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.          ② <math>b_2</math>의 절댓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.          ③ <math>d_1</math>의 절댓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.          ④ <math>d_2</math>의 절댓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.          ⑤ <math>d_3</math>의 절댓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.</p> <p><small>☆정답</small>  <small>난도 ★★</small>          ④ <math>d_1</math>은 화폐수요의 이차함탄력성이다. <math>d_1</math>의 절댓값이 증가하면 LM곡선이 완만하게 되어 구축효과가 작아지므로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(케인즈학파의 주장).          ① <math>a_2</math>은 한계소비성향(MPC)이다. <math>a_2</math>의 절댓값이 증가하면 승수효과가 작아지므로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.          ② <math>b_2</math>은 투자의 이차함탄력성이다. <math>b_2</math>의 절댓값이 증가하면 구축효과가 커지므로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.          ③ <math>d_2</math>은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 <math>d_2</math>의 절댓값이 증가하면 LM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고,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font-size: small;">답 ①, ④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small;">제6장   확인학습문제 365</p>	<p>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         -&gt; 옳지 않은 것은?</p> <p>① <math>a_2</math>는 한계소비성향(MPC)이다. <math>a_2</math>의 절댓값이 증가하면 승수효과가 작아지므로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.          -&gt; ① <math>a_2</math>는 한계소비성향(MPC)이다. 한계소비성향이 증가하면 승수효과는 커지고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다.</p> <p>답 ①, ④          -&gt; 답 ④</p>
		수정 사유	정답 수정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<p>1권 375p 번호 : 15</p>	<p>정답</p>	 <p>11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채권자 자신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12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13 점유를 침해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면 유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14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15 부동산에 기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,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16 유치권자는 매수인(경락인)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17 유치권의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인도된 경우,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18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,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19 공사채권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기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·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20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정답 및 핵심 11 × 12 ○ 13 × 14 × 15 ○ 16 × 17 ○ 18 × 19 ○ 20 ○</p> <p>오답분석 11 유치권은 다음권이므로 자신소유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. 13 점유를 회수해야 유치권이 부활한다. 14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후에 점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치권이 성립한다. 16 제3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, 채권의 변제는 청구할 수 없다. 18 소유자 승낙없이 대여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권으로 대항하지 못한다.</p> <p>제9장   유치권 375</p>	<p>15번 X</p> <p>오답분석</p> <p>15 가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는 의미는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는 의미이므로,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.</p>
		<p>수정 사유</p>	<p>정답 수정</p>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<p>3권 583p 번호 : 6</p>	<p>해설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임의평가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</p> <p>위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[2005다71659, 71666, 71673].</p> <p><b>04 ***</b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㉠</span></p> <p><b>정답해설</b></p> <p>② 제26조 제2항</p> <p><b>오답해설</b></p> <p>①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허가의 결정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항의 처분행위를 추진하는 행위를 행할 수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법원의 초과행위허가 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등본을 매수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이전에 한 부채나소유의 주식매매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없다[90다30063].</p> <p>③ 부재자의 자택에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점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함으로써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 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[89다20].</p> <p>④ 실종자에 대하여 1990. 7. 30. 이후 5년간 생사불명을 확인으로 이미 1988. 11. 26. 실종선고가 되어 확정되었는데도, 그 이후 타인의 청구에 의하여 1992. 12. 28. 세력이 확정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[96다12738].</p> <p>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어야 실종선고 전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된다.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·유증의 개시는 그 개시시점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,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처분시점 소급하여 무효로 되어, 실종자의 배우자가 재혼하였던 친혼의 부활로 인해 후혼은 중혼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.</p> <p><b>05 ***</b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㉠</span></p> <p><b>정답해설</b></p> <p>⑤ 정산인은 공고된 재권선고기간 내에는 재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며, 이 경우 법원은 재권자에 대한 자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[제90조3].</p> <p><b>오답해설</b></p> <p>① 제45조 제3항, 제45조 제2항</p> <p>② 제45조</p> <p>③ 제45조 제6호</p> <p>④ 민법 제90조, 제91조, 제97조와 같은 형사벌칙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유죄되므로 민법 그 형사법규범이나 그 형사법이 형사법인의 목적행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[97다2038].</p> <p><b>06 ***</b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㉠</span></p> <p><b>정답해설</b></p> <p>②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, 피배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[89다가1170].</p> <p><b>오답해설</b></p> <p>① 제35조 제1항 제2문</p> <p>③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,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급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고,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가려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[2002다27088].</p> <p>④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,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[제35조 제1항], 또한 사원도 위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하여 위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[2008다13746]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과목   민법 정답 및 해설 583</p>	<p>① 제35조 제1항 제2문</p>
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정 사유</p>	<p>오타 수정</p>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	
2권 621p 번호 : 5	해설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감정평가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</p> <p><b>해설</b> 년도 * * *</p> <p>ⓐ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가 정부가격에 대해진다. 이 정부가격에 대해진 금액만큼 이자비용의 차이가 발생한다.</p> <p>ⓑ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  <math>W2,000,000 \times 1.05^3 \times 0.7118 = W149,478</math></p> <p>ⓒ 이자비용의 차이발생  <math>W149,478 \times 0.12 = W17,938</math></p> <p><b>05</b> (주)김평은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(만기 3년)를 액면발행하였다. 20x3년 1월 1일에 액면금액의 40%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인식되는 주식발행초과금은(단, 전환권 대가는 전환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며,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.)</p> <p>• 액면금액 : W1,000,000                  • 표시이자율 : 연 5%                  • 이자지급시점 : 매년 12월 31일                  • 전환사채의 시장이자율 : 연 12%                  • 전환가액 : W2,000(보통주 주당 액면금액 W1,000)                  • 상환할증금 : 만기상환시 액면금액의 118.89%로 일시상환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기간</th> <th colspan="2">단일금액 W1의 현재가치</th> <th colspan="2">정상연금 W1의 현재가치</th> </tr> <tr> <th>5%</th> <th>12%</th> <th>5%</th> <th>12%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0.9524</td> <td>0.8929</td> <td>0.9524</td> <td>0.8929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0.9070</td> <td>0.7972</td> <td>1.8594</td> <td>1.6901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0.8638</td> <td>0.7118</td> <td>2.7233</td> <td>2.4018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㉠ W166,499                      ㉡ W177,198                      ㉢ W245,939                      ㉣ W256,600                      ㉤ W306,747</p> <p><b>해설</b> 년도 * * *</p> <p>ⓐ 20x1초 전환사채의 부채요소  <math>W1,198,600 \times 0.7118 + 50,000 \times 2.4018 = W973,373</math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제3장   육인(하)승문제 621</p>	기간	단일금액 W1의 현재가치		정상연금 W1의 현재가치		5%	12%	5%	12%	1	0.9524	0.8929	0.9524	0.8929	2	0.9070	0.7972	1.8594	1.6901	3	0.8638	0.7118	2.7233	2.4018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 <math>W1,198,600 \times 0.7118 + 50,000 \times 2.4018 =</math>  <b>W973,253</b> </p>
기간	단일금액 W1의 현재가치			정상연금 W1의 현재가치																							
	5%	12%	5%	12%																							
1	0.9524	0.8929	0.9524	0.8929																							
2	0.9070	0.7972	1.8594	1.6901																							
3	0.8638	0.7118	2.7233	2.4018																							
		수정 사유	계산식 수정																							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<p>3권 622p 번호 : 38</p>	<p>문계-본문</p>	<p>SD에듀(www.sdedu.co.kr)</p> <p><b>37 ***</b></p> <p><b>기준해설</b></p> <p>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</p> <p><b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(정비구역의 대상 등)</b></p> <p>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건축물의 건축 등 「건축법」 제11장 제2호에 따른 건축물(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)의 건축, 용도변경</li> <li>2. 공작물의 설치 : 인공물 기둥에 제작한 시설물(건축법,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)의 설치</li> <li>3. 토지의 경질변경 : 절벽(절경기)·성벽(옹벽기)·정지(정고벽기)·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질을 변경하는 행위,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</li> <li>4. 보석의 채취 : 흙·모래·자갈·바위 등의 보석을 채취하는 행위. 다만, 토지의 경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.</li> <li>5. 부지분할</li> <li>6. 물건용 용이하는 행위 : 이등이 없지 아니한 물건용 1개 이상 용이하는 행위</li> <li>7. 조목의 벌채 및 식재</li> </ol> <p><b>38 ***</b></p> <p><b>기준해설</b></p> <p>㉡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는 재개발사업·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시행한다.</p> <p><b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(재개발사업·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)</b></p> <p>① 시장·군수 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지동소유자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또는 신축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"지정개발자"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.법 제27조 제1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한자(한·7층) 및 안전관리(기분법), 제27조 또는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에 따른 사용제한·사용금지·그 밖의 불기피한 사유를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</li> </ol> <p><b>39 ***</b></p> <p><b>기준해설</b></p> <p>㉢ 정비사업자의 추산액(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6호</p> <p><b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(관리계획서의 인가 범위)</b></p> <p>① 사업시행자는 제23조에 따른 분할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할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·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서를 변경·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분할계획</li> <li>2. 분할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</li> <li>3. 분할대상자별 분할대상인 면적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(당해관리 구역수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)</li> </ol> <p>2. 제15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유변 또는 부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(제23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)</p> <p>3. 제23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항성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</p> <p><b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(지정개발자의 요건)</b> 법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비구역의 부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0퍼센트 이상의 부지를 소유한 자로서 부지동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</li> <li>2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(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)에만 해당한다(이하 "부지동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"라 한다)</li> <li>3. 신축업자로서 정비구역의 부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부지를 소유한 자</li> </ol> <p>622 2022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</p>	<p>3. 신축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축받은 자. 이 경우 정비구역 전체 면적에서 국·공유지는 제외한다.</p> <p>(22년 12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, 22년 12월 11일 시행)</p>
		<p>수정 사유</p>	<p>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 추가</p>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 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